

[2012년 해경 승진시험(경사) 해설 및 정답]

문1.

[해설] 조문

별 도리없이 암기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이다. 대신 신용훼손죄,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력으로 두문자를 따서 구별해 두면 좋다. 입찰방해죄는 허·위(허위나 위계로서), 입찰방해죄는 위·력(위계나 위력으로서), 업무방해죄는 허·위·력(허위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로 약간씩 다르다.

[정답] ④

문2.

[해설] 강요죄에 대한 조문과 이론

- ① 인질강요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가능하면 목적범의 종류를 암기해 두기 바란다.
- ② 해방감경이 인정되는 범죄는 약취·유인의 죄의 장에 있는 범죄와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이다. 인질살인·치사와 인질강도죄는 해방감경 규정이 없다.
- ③ 강요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협박시이다. 따라서 이 폭행·협박이 미수가 되면 강요죄는 미수가 된다. 강요죄도 미수를 처벌한다.
- ④ 강요의 상대방이 인질이 되면 그냥 강요죄가 된다. 따라서 인질강요죄의 강요의 상대방은 인질 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정답] ①

문3.

[해설] 판례

판례는 성교 자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착오가 없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일반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심신미약자인 여자가 성인이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든 형법상 무죄가 된다. 대신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문4.

[해설] 판례

둘 다 발각되어 도망하다가 그 중 하나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준)강도상해죄가 되고, 이를 발각될 때 나머지 한명도 예측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둘 다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이다.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하나는 강도치상죄가 되어야 하는데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것도 주의하여야 한다.

<비교판례> 발각되기 이전에 먼저 도망한 사건은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판시한다.

[정답] ③

문5.

[해설] 조문적용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처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사기결혼은 이런 재산죄적 요소가 없다. 따라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②

문6.

[해설] 판례

모욕죄는 그 적시한 사실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본 사안은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정답] ③

문7.

[해설] 판례

운전면허증이라는 공문서를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용도 내로 사용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승용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방해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두 죄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②

문8.

[해설] 판례

신용훼손죄와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인데, 신용훼손은 허위의 사실만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큰따옴표 속의 말은 진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신용훼손죄는 되지 않았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성립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판례에서는 명예훼손죄로는 공소제기하지 않아서 검토한 바 없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무죄가 된다.

[정답] ④

문9.

[해설] 조문

친족상도례에서 “도”는 절도의 “도”자이다. 즉 재산죄 중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죄와 전혀 관계 없는 주거침입죄에 적용될 수 없다.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규정이 있는데 신체의 일부가 침입하더라도 거주자가 놀라게 되면 보호법익이 주거의 평온인 만큼 주거침입죄는 기수가 된다. 보통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당기는 때이다. 그리고 남편이 부재중이더라도 간통 목적으로 외간 남자를 집에 들어오게 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특이한 판례도 있다.

[정답] ②

문10.

[해설] 이론

신뢰의 원칙은 교통이나 의료 영역에서 과실범의 인정 여부를 따질 때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일정한 법규를 준수한다면 상대방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하여 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다. 인·신·사·스로 암기하면 편하다. 인>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했을 때, 신>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을 때(어린이, 노인 등), 사> 사고 다발지역, 스>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하고 있을 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문11.

[해설] 이론과 판례

고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

문12.

[해설] 이론

과잉방위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모두 갖춰졌으나 상당성을 초과한 방위를 말하므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오상과잉방위에 적용하면 안 되고 오상방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우연방위(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갖춰졌으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방위)는 기수범설과 불능미수설로 의견이 나누어진다.

[정답] ③

문13.

[해설] 판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 소송사기는 기수가 되고 그 후 판결정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게 된다. 동시 사건이 아니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②

문14.

[해설] 판례

적법절차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정당한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판례이다. 혹 정당행위로 잘못 알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정답] ③

문15.

[해설] 판례

- ① 매음료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② 이미 자기가 타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관하던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행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
- ④ 사실상의 대금 지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된다.

[해설] ②

문16.

[해설] 판례

전화기 무단사용은 서비스 사용이기 때문에 이를 절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인정한 판례이다. 반면에 전기를 무단사용하는 도전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인정된다.

[정답] ③

문17.

[해설] 조문

동력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죄는 장물죄이다. 동력은 관리가능한 무체력을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성질상 장물죄에는 적용될 수 없어서 동력의 준용규정이 없다.

[정답] ①

문18.

[해설] 판례와 이론 적용

점유는 민법상의 개념으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그런데 형법의 점유는 민법보다 그 범위를 넓게 보는데 규범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점원과 같은 점유보조자의 경우, 민법에서는 점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형법에서는 인정한다. 또한 강간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두고 온 핸드백도 당장은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규범적 의미에서 그 점유를 인정한다.

[정답] ③

문19.

[해설] 이론

예방적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다. 그러나 2번 지문처럼 이미 예견하고 취해진 방위조치라도 침해의 개시 또는 진행 중에 그 효과가 나타나면 가능하다.(예를 들어 도둑의 침입을 예상하고 집에 미리 개를 풀어놓은 경우) 그런데 4번의 경우는 침해는 끝났고 뒤쫓아 가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로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문20.

[해설] 이론과 판례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판례는 ‘빠끼 주점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특수절도의 공모에 참가한 갑에게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정답] ①

문21.

[해설] 판례

총무과 직원은 회사 돈을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래 가져갔다면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된다.

[정답] ④

문22. (생략)

문23.

[해설] 판례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요구에 불응’하거나 ‘임의로 처분’했을 때 성립한다.

- ①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권이 있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자신의 지분 이외의 상속부동산 지분에 대한 처분권이 없다. 따라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③ 사기죄가 아닌가 싶지만 사기가 되려면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1억원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다. 따라서 횡령죄만 된다.
- ④ 위임받은 타인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를 하더라도 이는 위임인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 비교할 판례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변제는 회사의 사무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정답] ②

문24.

[해설] 이론과 판례, 조문

- ① 반전된 금지착오는 ‘처벌법이 없는데 있는 줄 알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환각범이라고도 한다. 죄가 되지도 않는 행위를 상상 속에서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를 따져볼 필요 없이 언제나 불가벌이다.
- ② 판례는 중지범(중지미수)을 인정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비는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중지범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 ③ 불능미수는 단적인 예로 ‘없는 객체를 있는 객체로 잘못 생각’한 것이다. 즉 살인할 대상이 시체인데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칼로 찌른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그 위험성 여부를 따져서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그 형태는 ‘있는 객체를 없는 객체로 잘못 생각’한 구성요건적 착오를 뒤집어 놓은 것 같다고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도 한다.

- ④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참고로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사유이고,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다.

[정답] ①

문25.

[해설] 판례

- ① 선반기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란 것은 없고 공장저당이 된 경우인데 이 경우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해 임의로 반출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
- ② 직무집행을 하는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되므로 자기 소유의 물건을 타인의 점유로부터 취거해 온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 비교할 판례로 회사의 부사장 등이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취거해 온 경우 그 회사 자체의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가 되지 않는다.
- ③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권리’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가압류도 예방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채권자의 일종의 권리로 본다.
- ④ 너무 단적으로 표현된 지문이라 틀렸다고 하기 힘들지만 나머지 지문들이 맞고 이런 내용의 판례에 따르면 틀린 지문이 된다. 즉 여기서 타인의 권리는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을 말하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해도 그 권리는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문26.

[해설] 판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현주건조물을 불태워 죽여야 성립한다. 또한 불길이 방안을 태우고 천정에 까지 옮겨 붙었다면 매개물을 떠나서 현주건조물의 독립연소상태가 된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가 된다.

[정답] ③

문27.

[해설] 이론

- ② 예비죄도 하나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단지 혼자서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처벌되는 경우는 우리 형법에 없다. 따라서 그 결심이 있고 외부적인 어떤 준비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 ④ 잘 알아두어야 할 지문이다.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는 중지미수에서만 실익이 있는 구분이다.

[정답] ②

문28.

[해설] 판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한 사건인데 형법상으로는 합동강간죄인 특수강간죄는 없으나 성폭력특별법에는 있다. 그리고 강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망을 본 갑도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정답] ③

문29.

[해설] 판례

- ①, ③ 위장결혼은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되고, 위장이혼은 되지 않는다.
- ② 예고등기는 특별한 효력이 없는 등기이다.
- ④ 가장매매라도 둘 사이에 매매의 의사는 없었을지라도 등기를 이전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답] ①

문30.

[해설] 판례

원래 자기 형사사건에서 범인도피죄는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 판례와 같이 자기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된다.

[정답] ④

문31.

[해설] 이론

- ① 교사범이든 방조범이든 고의를 가진 정범이 있어야 가능하고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행위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방조범은 부작위에 의해서는 가능하나 교사범은 정범의 범의를 일으켜야 하므로 부작위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② 교사범과 방조범은 이종의 고의가 필요하다. 즉,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신의 교사의 고의, 방조의 고의를 각각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③ 교사는 정범의 범의를 일으켜야 하므로 편면적 형태가 불가능하지만,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에 도움을 주면 되므로 편면적으로도 가능하다.
- ④ 간접교사나 간접방조는 둘 다 허용된다.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된다.

[정답] ②

문32.

[해설] 판례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객관적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한다. 사안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좀 중요한 판례이므로 잘 알아두기 바란다.

☞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수표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위조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의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22. 2005도3203)

[정답] ①

문33.

[해설]

- ① 뇌물수수의 의사로 그 액수가 얼마이든지 받았기 때문에 받은 전부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② 뇌물을 받아서 그대로 두었다가 돌려줬다면 그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지만 자기의 재산과 섞이게 되면 똑같은 금액을 돌려줬어도 추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자기의 예금에 입금했다가 돌려주는 것도 자기 재산과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액과 같은 금액을 돌려줬어도 추징을 하게 된다.
- ③ 증뢰물전달죄는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받는 순간 기수가 된다. 따라서 받은 뇌물을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④ 이미 소비하고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와 같은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추징한다. 왜냐하면 받은 그대로 돌려준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2번 지문과 같은 맥락이다.

문34.

[해설] 판례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보증한 수표이기 때문에 발행만 되면 발행인이 입금을 안하더라도 은행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단지 발행인과 은행과의 관계만 문제될 뿐이다.

[정답] ②

문35.

[해설] 판례

상습도박죄에 도박방조죄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습도박 포괄일죄가 된다. 비슷한 사례로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가 반복되는 경우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가 된다.

[정답] ④

문36.

[해설] 판례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에 사후범죄가 이미 평가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따라서 주된 범죄와 비교하여 보호법익이 다르거나 불법이 더 높다거나 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① 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저금을 인출하면 절도죄와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가 된다. 보호법익이 다르고 불법이 더 높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② 횡령한 금반지를 매각한 경우 주된 횡령죄 이외에 따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재물에 대한 횡령죄는 한번 뿐이다.

③ 살인죄(개인적 법익)가 사체유기죄(사회적 법익)는 그 보호법익이 다르다.

④ 절도보다 강도가 그 불법의 양이 훨씬 크다.

[정답] ②

문37.

[해설] 판례

배임죄에서 구별하기 힘든 것이 단순한 채권관계인지, 아니면 사무처리 위임관계인지이다. 또한 자기의 사무인지 타인의 사무인지도 구별하기 쉽지 않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해 보자. 보통 사무처리관계가 되려면 고용·위임관계에 있거나 부동산관련 등기의무 등의 협력의무가 있거나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담보권 실행 전)이다.

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행위를 채권자가 하는 것은 자기 사무이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② 부동산에 있어서 중도금까지 전달되면 등기이전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것은 타인의 사무가 된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양도담보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임의처분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자기의 재물이기 때문에 횡령죄는 당연히 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 매도 후 중도금을 수령하면 등기이전 협력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주는 순간 배임죄가 되고 이후에 말소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된 배임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 ①

문38.

[해설] 판례

①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③ 익명의 신고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④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심판기능과 개인적 법적 안전이다. 따라서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피무고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문39. (문제 오류로 생략)

문40.

[해설] 조문 적용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앞 두 가지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다.

① 강취한 재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이므로 몰수할 수 없다.

②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다.

③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다.

④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이다.

[정답] ①

문41.

[해설] 조문

①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기간은 같다(제62조의2 제2항). 반면에 선고유예기간(2년)과 보호관찰기간(1년)은 다르다.

②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

③ 제62조 제2항

④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후적 경합범으로 인하여 2개의 자유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정답] ③

문42.

[해설] 판례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법적으로 모자 관계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된다.

[정답] ②

문43.

[해설] 판례

위험한 물건은 상황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험한 물건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정답] ④

문44. (생략)

문45.

[해설] 판례

임의동행임에도 장소적인 제한을 강제하였기 때문에 감금죄가 된다.

[정답] ③

문46.

[해설] 이론과 판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정답] ③

문47.

[해설] 이론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따라서 ‘왜’를 제외한 ‘육하원칙’을 알아두면 된다. 누가(행위주체), 언제·어디서(행위상황), 무엇을(행위객체), 어떻게(행위방법·수단)와 결과범이라면 이런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결과, 그리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그 외 가중·감경적 구성요건요소 등이 있겠다.

- ① 책임능력은 책임의 요소이다.
- ②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는 과실의 문제이다.
- ③ 친족상도례에 있어서의 ‘친족의 신분’은 처벌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 ④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은 행위주체에 관한 것이다.

[정답] ④

문48.

[해설] 판례와 이론

- ① 배임죄의 본질을 배신설로 보기 때문에 사실행위로도 가능하다.
- ②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③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면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 ④ 자기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문49.

[해설] 판례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판례를 보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찾으면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판례를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②

문50. (생략)